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 번호	21052
----------	-------

제출연월일 : 2026. 9. 3.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변동성이 커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운용 장치가 필요하고, 인공지능(AI) 혁신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기 호전 등으로 특정 회계연도에 국세 수입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 재원으로 미래 대응을 위한 각종 전략 분야에 투자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경기변동 등으로 발생한 장기 세입 추세치를 상회하는 조세수입과 해당 연도에 일시적으로 세입예산을 상회하는 초과 조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안정화 기능과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기능을 갖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대응기금의 설치(안 제1조, 제3조 및 제13조제1항)

국가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

나. 기금의 계정구분(안 제4조)

미래대응기금의 계정을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한 총괄계정과 미래대응투자 목적의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및 교육·인재계정으로 구분함.

다. 기금의 재원 및 용도(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며,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및 교육·인재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13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신탁,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기금사용계획 제출(안 제14조)

미래대응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용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안 제15조)

미래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여 기획예산처에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05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053호) 및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10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대응투자”란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 성장동력, 지역발전, 교육·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내국세 세입”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 중 다음 각 목의 수입(관계되는 가산세 수입 및 해당 회계연도 전에 징수가 결정되었으나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된 수입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담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바. 인지세

사. 증권거래세

3. “내국세 세입 예산액”이란 특정 회계연도의 세입예산 중 내국세 세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내국세 세입 추세치”란 특정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규모를 과거 추세에 따라 추산한 금액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text{특정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 = A \times (1 + B)^2$$

A: 특정 회계연도의 2년 전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결산액

B: 특정 회계연도의 12년 전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결산액 대비 A의 연평균 증가율

5. “추가세수”란 특정 회계연도의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국회가 확정한 그 회계연도의 최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뺀 금액을 말한다.
 6. “초과세수”란 「국가재정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예산(재추계 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액을 말한다) 중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미래기금의 계정 구분) 미래기금은 총괄계정,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및 교육·인재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5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추가세수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초과세수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3.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4.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총괄계정 예수금”이라 한다)
 7.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이하 “총괄계정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8.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교육·인재계정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9.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10.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11. 총괄계정의 운용 수익금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의 예탁
3.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에의 예탁
5. 총괄계정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
7. 미래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6조(청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청년계정의 재원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청년계정의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

② 청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일자리 · 창업, 주거안정, 자산 형성, 혼인 · 출산, 생활 · 문화 등 청년 지원 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지원 사업
3. 총괄계정으로의 전출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출연, 보조, 융자 및 출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성장동력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성장동력계정의 재원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성장동력계정의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

② 성장동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지원 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동력 지원 사업

3. 총괄계정으로의 전출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출연, 보조, 융자 및 출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지방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총괄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이하 “지방계정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4. 총괄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5. 지방계정의 운용 수익금

② 지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 정주 여건 개선, 농어촌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지역발전 지원 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발전 지원 사업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의 예탁

4. 총괄계정으로의 전출

5. 총괄계정에의 예탁

6. 총괄계정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출연, 보조, 융자 및 출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인재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과 내국세 세입 추세기 중 작은 금액의 1만분의 2,079에서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총괄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4. 총괄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이하 “교육·인재계정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6. 교육·인재계정의 운용 수익금

② 교육·인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사업
2. 고등·평생교육 지원 사업
3. 첨단산업 인재 양성, 우수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인재 육성 사업
4. 국가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교육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인재 지원 사업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에 따른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
 7.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의 예탁
 8. 총괄계정에의 예탁
 9. 총괄계정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은 출연, 보조, 융자 및 출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 특별회계 또는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미래기금 총괄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11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총괄계정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총괄계정 예수금에 대해서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채·공채의 이자율 수준,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기금등의 특성 및 기금등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운용심의회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상환 요청에 따라 해당 총괄계정 예수금을 예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에 따른 이

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기금등의 관리주체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미래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미래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미래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유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3. 그 밖에 미래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기금 또는 미래기금에 설치된 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 미래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사용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① 미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미래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괄계정 예수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 총괄계정 예탁금, 지방계정 예탁금 및 교육·인재계정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미래기금의 미래대응투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미래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미래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미래기금의 각 계정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미래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전액을 미래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④ 미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출사업의 이월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미래기금의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보조사업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해당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제18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지방계정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라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제31조의2·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조 (기금의 설치)	○ 세수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설치
2	안 제4조 (미래기금의 계정 구분)	○ 미래대응기금은 총괄계정,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및 교육·인재계정으로 구분
3	안 제5조 (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 총괄계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구성함 1. 추가세수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초과세수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3. 세제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4.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7.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이하 “총괄계정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8.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교육·인재계정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9.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10. 총괄계정의 운용 수익금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4	안 제6조 (청년계정의 재원과 용도)	○ 청년계정의 재원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청년계정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
5	안 제7조 (성장동력계정의 재원과 용도)	○ 성장동력계정의 재원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성장동력계정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
6	안 제8조 (지방계정의 재원과 용도)	○ 지방계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함 1.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총괄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이하 “지방계정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4. 총괄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5. 지방계정의 운용 수익금
7	안 제9조 (교육·인재계정의 재원과 용도)	○ 교육·인재계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함 1. 해당 연도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과 내국세 세입 추세치 중 작은 금액의 1만분의 2,079에서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총괄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4. 총괄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이하 “교육·인재계정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6. 교육·인재계정의 운용수익금
8	안 제13조 (미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함
9	안 제15조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미래대응기금 운용심의회를 둠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 (기금의 설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 (미래기금의 계정 구분)	
3	안 제5조 (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4	안 제6조 (청년계정의 재원과 용도)	
5	안 제7조 (성장동력계정의 재원과 용도)	
6	안 제8조 (지방계정의 재원과 용도)	
7	안 제9조 (교육·인재계정의 재원과 용도)	
8	안 제13조 (미래기금의 관리 및 운용)	
9	안 제15조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2. 상세 사유

- 법률안은 세수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의 미래대응투자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정 안정화 장치를 설치하려는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입금, 예수금, 운용수익금 등을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특정하기 곤란함
- 또한, 법률안에 따라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전제로 ‘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확대·신규 편성 여부와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움
- 이에 법률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II.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사무관	국장
박성준	박성훈
(미래대응기금 추진단)	(미래대응기금 추진단)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성준	044-214-2362	bbakko0@korea.kr